

자체평가규정

시행: 2022. 10. 2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·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체평가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자체평가"라 함은 교육·행정단위별 교육목표, 특성화, 교육여건 및 재정, 연구, 사회진출도, 국제화, 재학생 만족도, 개선도, 행정 분야 등의 핵심평가지표에 대하여 대학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2. "교육·행정단위"라 함은 단과대학, 대학원,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평가대상) ① 평가대상은 「경희대학교학칙」 및 「처무규정」에서 정하는 교육·행정단위로 한다.

- ② 통·폐합된 교육·행정단위는 관련 업무를 승계하여 존속하는 교육·행정단위와 통합하여 평가한다.
- ③ 신설되는 교육·행정단위의 경우에는 수립된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한다.

제4조(평가시기) 자체평가는 매 학년도 제1학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평가방법) ① 기획조정처장은 자체평가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체평가 총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는다.

② 기획조정처장은 자체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시행계획을 전 부서에 사전 공지하여 자체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교육단위별 자체평가는 계열별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계열구분은 교육부 학문분류기준에 따른다. 다만, 계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 총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캠퍼스 학무부총장이 정한다.

④ 자체평가는 공정성과 투명성, 그리고 연속성 확보를 위해 각 교육·행정단위의 제출 자료와 현장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다.

제6조(평가기준) 자체평가의 평가영역,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은 자체평가 총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제7조(조직) 자체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자체평가 총괄기획위원회, 자체평가 실무위원회, 성과평가위원회를 둔다.

제8조(자체평가 총괄기획위원회) ① 자체평가 총괄기획위원회는 양 캠퍼스 학무부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, 기획조정처장, 교무처장, 연구처장, 미래혁신단장,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자체평가 총괄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자체평가의 목표 및 그 결과에 따른 보상계획
2. 자체평가의 시행계획
3. 자체평가의 평가영역,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
4. 자체평가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건의사항
5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③ 자체평가 총괄기획위원회 회의는 양 캠퍼스 학무부총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된다.

④ 자체평가 총괄기획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자체평가 총괄기획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조정처장이 되며, 회의록을 작성하여 자체평가 총괄기획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자체평가 실무위원회) ① 자체평가 실무위원회는 기획조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교무처, 연구처, 국제처, 미래혁신원 미래인재센터 소속 직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실무위원회는 평가의 계획수립·진행·결과분석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.
- ③ 실무위원회는 자체평가 총괄기획위원회에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성과평가위원회) ① 성과평가위원회는 캠퍼스 학무부총장 산하에 두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전문가와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이 된다.
② 성과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교육·행정단위를 타 대학과 비교 평가하는 등 자체평가를 통하여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도록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학무부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③ 성과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기준의 개선방안, 결과의 활용방안 등을 자체평가 총괄기획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.

제11조(평가결과 보고 등) ① 양 캠퍼스 학무부총장은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자체평가 총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양 캠퍼스 학무부총장은 전향의 결과를 평가 결과를 교육·행정단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.

제12조(이의신청) ① 교육·행정단위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소속 캠퍼스 학무부총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.
② 전향의 경우 양 캠퍼스 학무부총장은 자체평가 총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(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) ① 자체평가 결과는 대학주보 및 본교 홈페이지, 정보공시제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② 자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 교육·행정단위에 별도의 행·재정지원을 한다.
③ 자체평가의 결과는 본교의 장·단기 발전계획 및 전략수립, 대학 특성화 정책수립, 교육·행정단위 구조조정, 학생 정원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14조(보칙)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체평가 총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